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2001. 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3월 28일
- 회부일자 : 2001년 3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(2001. 4. 18)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홍 기)

가. 제안이유

- 석유판매업(일반·용제대리점) 등록신청 시 종전에는 석유사업 법시행규칙에 의해 수수료 징수를 하였으나 석유사업법 개정 (2000.7. 29 산업자원부령 제107호)으로 시·도지사 권한사항으 로 이양됨에 따라
- 수수료 관련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여 석유판매업 (일반·용제대 리점) 등록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신설
 - 일반·용제 대리점 등록신청 : 1건당 30,000원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이 개정(2000. 7. 29)됨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가 시·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수수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

주요내용으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·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1건당 30,000원으로 하는 것임.

- ⇒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의 제2호 나목에 (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 준	요 액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 나.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(2) 석유판매업(일반·용제대리점) 등록신청	1건	30,0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2] 제 증명 등 수 수 요 율 표 (단위:원)			[별표2] 제 증명 등 수 수 요 율 표 (단위:원)		
구 분	기 준	요 액	구 분	기 준	요 액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 가. (생략) 나. 상공 및 동력 자원 관계 (1) (생략) (2) (신설)			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1) (현행과 같음) (2) <u>석유판매업(일반· 용제대리점)등록 신청</u>	1건	30,000

관계 법령 발췌

【 석유사업법 】

제9조(석유판매업의 등록 등) ①석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- ④ 생략

제31조(수수료)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(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을 제외한다)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